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6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22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6. 22.(화)	담당부서	해외투자과
담당과장	안성호 과장(044-203-4090)	담 당 자	김예은 사무관(044-203-4069)

첨단·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

개정 「유턴법」, 6.23일부터 시행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'문승욱')는 '20.12.22(목) 공포된 「**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**(이하 '유턴법')」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됨으로써 금일(6.23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○ 금번 법령 개정은 **첨단산업** 및 **공급망 안정 핵심품목**에 대해서는 **해외사업장 요건**을 **면제**하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,

○ 기업 유턴에 기여한 **수요기업**에 대해서도 **지원**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○ **외투기업**이 **유턴**하는 경우에도 **지원가능**하도록 하는 한편, 유턴기업의 **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**를 허용하는 등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.

□ 개정 유턴법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**첨단**이거나 **공급망 핵심품목**의 경우 **해외사업장 축소 요건**이 **면제**된다.

- 첨단산업의 경우, 「산업발전법」 상 **첨단기술**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**신성장·원천기술**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하였으며,

- 공급망 핵심품목은 **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** 또는 **국가핵심기술**로 확인받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하였다.

○ **유턴 지원대상 업종**에 기존 제조업·정보통신업·지식서비스업에 더해 **소독,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** 등 **방역·면역 관련 산업**을 **추가**하여 **팬데믹 상황**에 대비한 **대응 역량**을 **강화**하였다.

○ **수요기업**과 **유턴기업**이 **연계**하여 복귀하는 **협력형 복귀**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되었다.

- **수요기업**이 **물량 보증, 공동 연구개발** 등으로 기업 유턴에 **기여**하는 경우 **수요기업**과 **유턴기업**에 **보조금, 연구개발** 및 **인력 양성** 등을 **우선·추가 지원**할 수 있다.

- 또한, **비수도권**으로 **2개 이상 기업**이 **협력형**으로 **복귀**하는 경우 **해외사업장 축소요건**이 **완화**(25%→10%)된다.

○ **외투기업**에 대해서도 **유턴기업 선정·지원**이 가능해진다.

- 이전에는 외투기업이 유턴 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, **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**로부터 **10년 이상 경과**한 경우에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다.

○ 아울러, 개정 「**외국인투자촉진법**(이하 '외촉법')」도 금일 시행되어 **유턴기업**이 **비수도권 외투단지**에 **입주**가 가능해진다.

- **투자액** 및 **고용인원**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**입주**와 동시에 **임대료**도 **감면**(75~100%)받을 수 있다.

○ 이외에도 **R&D·시장개척·정주여건 개선·보증 지원** 등 유턴기업의 **경쟁력 강화**를 위해 마련된 각종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.

< **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** >

法	令	則	고시
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대상	첨단산업 정의 : ❶「산업발전법」상 첨단기술·제품 ❷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성장·원천기술 활용 제품		공급망 핵심품목 정의 : ❶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, ❷국가핵심기술 활용 제품
지원대상 업종 확대	방역·면역 관련 산업으로 소독·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포함		
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 포함	타 법령 등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필요		
협력형 복귀	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 등 우선지원	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협력형 복귀시,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(25%→10%)	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협력형 복귀시, 투자보조금 추가 지원(5%p↑)
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(외촉법)	투자액·고용인원 등 입주요건 및 임대료 감면비율 규정		<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> 유턴기업 입주 조항 신설

□ **산업부**는 **개정 유턴법 시행**을 계기로 **첨단 분야,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 유턴**이 **확대**되고,

○ **협력형 유턴**에 대한 **지원제도**의 **도입**으로 대기업 등 **수요기업**의 **유턴 참여**도 **활성화**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(☎ 044-203-40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